

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| 과태료(단위: 만원)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·제8호(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 | 법 제70조제3항 | 100         | 150   | 200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나. 법 제21조제1항제5호(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70조제1항 | 300 | 400 | 500 |
| 다. 법 제21조제1항제6호·제9호·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·제5항(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0조제2항 | 150 | 200 | 300 |